

# CFP® 자격 인증 규정

## (Requirements for CFP Certification)

2000.	9.	19.	제정
2001.	6.	12.	개정
2001.	12.	19.	개정
2002.	7.	24.	개정
2003.	2.	11.	개정
2004.	1.	6.	개정
2005.	2.	25.	개정
2005.	12.	22.	개정
2007.	1.	25.	개정
2007.	12.	28.	개정
2008.	3.	14.	개정
2009.	9.	28.	개정
2011.	12.	22.	개정
2014.	12.	23.	개정
2016.	3.	29.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CFP® 또는 CERTIFIED FINANCIAL PLANNER™ 자격(이하 “CFP자격 인증자”, “CFP인증자” 또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라 한다)의 인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CFP 자격인증과 AFPK 자격인증)

- 1) 재무설계업무에 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의 인증은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이하 “국제FPSB”, “FPSB국제본부” 또는 “국제FP표준기구”라 한다)의 “재무설계사의 전문역량 구비요건(Financial Planner Competency Profile)”에 대한 국제기준에 따른 전문자격으로 국제FPSB평의회(FPSB Council) 회원국가간에 상호 인정되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자격과 재무설계업무에 대한 국내의 전문자격인 재무설계사(AFPK®)자격으로 구분한다.
- 2) CFP자격인증자와 AFPK자격인증자의 업무수행범위와 기준은 한국FPSB의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규정에 따른다. 다만, 유효한 CFP자격인증자는 AFPK자격인

증자로 간주되며, AFPK자격인증자의 업무를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다.

### 제3조 (CFP 자격인증의 요건)

- 1) CFP자격인증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교육이수, 자격시험, 실무경험, 윤리서약의 CFP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이 규정에 따라 CFP 자격인증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2) CFP 자격인증요건은 국내의 모든 주된 거주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인종, 국적, 성별, 종교, 나이, 질병, 장애 등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3) 이 규정에서 정하는 CFP자격인증요건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전문위원 등 관련당사자(Relevant stakeholders) 또는 국제FPSB의 의견을 참작하여 반영할 수 있다.
- 4) 전항의 CFP자격인증요건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한국FPSB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적용에 대한 적절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 제 2 장 교 육 이 수

### 제4조 (CFP 교육요건)

- 1) CFP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한 AFPK 자격인증자로서 한국FPSB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이 한국FPSB의 등록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CFP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CFP 교육요건에 관한 사항은 CFP교육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 (CFP 교과과정의 등록)

- 1) CFP교과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CFP교과과정의 편성지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한국FPSB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CFP교과과정의 등록신청과 승인에 관한 사항은 CFP교과과정의 편성지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 (CFP교육요건의 면제)

- 1)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국제FPSB평의회 (FPSB Council) 회원국과 미국의 자격인증기관이나 정규대학교육기관의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인증한 다음의 전문자격의 등록자나 학위의 유효한 소지자가 자격증이나 등록증 사본 또는 해당 자격인증기관이나 해당 자격등록기관 또는 대학원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AFPK 자격유무와 관계없이 CFP 교육요건에 따른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CFP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1) 공인회계사 등록자
  - (2) Chartered Life Underwriter (CLU) 등록자
  - (3) 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등록자
  - (4) 변호사 등록자
  - (5) 세무사 등록자
  - (6) 경영학 박사
  - (7) 경제학 박사
  - (8) 재무설계학 박사 또는 소비자학 등 관련학문의 박사
- 2) 제1항의 해당 자격인증기관이나 해당 자격등록기관 또는 대학원이 발행하는 등록증 또는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응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다만, 확인일 현재 해당자의 자격인증이나 학위취득 또는 자격등록사실이 유효하며, 또한 원칙적으로 징계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 3 장 자 격 시 험

#### 제7조 (CFP자격시험의 응시자격)

- 1) CFP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CFP 교과과정의 이수요건을 충족하는 유효한 AFPK자격인증자 또는 제6조(CFP교육요건의 면제)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의 서류를 한국FPSB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CFP자격시험 응시원서(별표 1)
  - (2) CFP 자격시험관리규정 제17조(CFP자격시험 응시서류)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 2) 한국FPSB는 CFP자격시험응시와 관련하여 제출되는 증빙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지정교육기관이나 해당증빙서류 발급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 3) 이 규정에 따른 CFP자격인증자, CFP자격이 정지된 자, CFP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다른 인증요건만 충족하면 CFP자격인증자가 될 자격이 있는 자(이하 “CFP자격시험 유효합격자”라 한다),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CFP자격인증이 취소된 자는 CFP자격시험에 응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CFP자격시험 관리규정 제18조(CFP자격시험의 응시제한)의 단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FPSB가 사전에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고 승인하는 자격인증자와 자격시험 유효합격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자격시험의 과목, 합격판정기준 및 합격유효기간)

- 1) CFP 자격시험의 형식, 과목, 배점, 시험시간, 합격판정기준 등은 CFP 자격시험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CFP자격시험의 합격유효기간은 해당 자격시험 합격발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하 “합격확정일”이라 한다)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복무, 출산 또는 육아,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학, 해외유학, 질병치료 및 장기요양 등 한국FPSB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합격유효기간을 최대 8년으로 연장한다.

제9조 (회원국 CFP자격인증자에 대한 특례)

- 1) 국제FPSB평의회 (FPSB Council) 회원국의 CFP자격인증기관이 자격을 인증한 CFP자격인증자(이하 “회원국 CFP자격인증자”라 한다)가 대한민국 국내에서 제한없이 CFP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국간 CFP자격의 상호인정 및 CFP표장의 국외사용에 관한 규정(이하 “CFP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한국FPSB의 CFP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FPSB의 CFP자격인증을 별도로 승인 받고자 하는 회원국CFP자격인증자는 CFP자격시험의 사례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2) 회원국 CFP자격인증자가 유효한 자격인증을 받은 회원국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여 조언만 허용되는 제한된 CFP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FP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FPSB에 등록하여야 한다.
- 3) 회원국 CFP자격인증자가 한국FPSB에 별도로 CFP자격인증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또는 제한된 CFP업무의 종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원국 CFP자격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추천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하며, 추천일 현재 해당자의 자격인증이 유효하고 징계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시험의 관리 등)

- 1) CFP자격시험관리위원회는 CFP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주관하고 원칙적으로 자격시험 완료 후 3주일 이내에 합격판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한국FPSB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 한국FPSB가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2) CFP자격시험의 관리 및 감독과 이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CFP자격시험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실 무 경 험

#### 제11조 (CFP 자격인증의 실무경험요건)

- 1) CFP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써 CFP 자격인증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설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한국FPSB가 인정하는 재무설계 실무지도자(supervisor) 자격을 보유한 CFP자격인증자의 직접적인 지도와 관리에 따라 실무경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수련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련기간의 3배를 실무경험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 실무경험은 금융기관 등 재무설계 관련기관에서 관리감독 및 연수 등을 포함하여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에 따른 6단계의 과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재무설계사의 전문역량 구비요건(Financial Planner Competency Profile)이 규정하는 재무설계에 대한 전문지식(Knowledge), 전문기술(Skill) 및 전문능력(Ability)을 적용하는 업무를 윤리규정을 준수하면서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실무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CFP자격인증에 관한 실무경험요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실무경험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CFP 자격시험 합격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하 “합격확정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 및 이후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복무, 출산 또는 육아,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학, 해외유학, 질병치료 및 장기요양 등 한국FPSB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이후 8년 이내로 한다.

#### 제12조 (경력 증명서)

- 1) 실무경험의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이하 집합적으로 “경력증명서”라 한다)는 담당업무별로 기간을 명기하고 해당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 부서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 2) 한국FPSB는 자격인증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경력증명서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실무경험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경력증명서발급기관 등에 대하여 경력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성격과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또는 보충설명을 요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 제 5 장 윤 리 규 정 준 수 의 무

#### 제13조 (윤리규정 준수서약서)

- 1) CFP 자격인증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신청하거나 회복신청(이하 집합적으로 “자격인증신청”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피고 여부 확인, 업계자율규제기관 또는 소속직장이나 단체 등으로부터의 징계여부 확인과 함께 자격인증의 유지 및 갱신 요건, 윤리규정, 재무설계업무수행기준규정, 징계규정을 포함하는 제반 관련규정과 법률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확인 및 동의,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징계의 사유와 조치내용의 공지에 대한 동의 내용이 포함된 윤리규정준수서약서(별표 2)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한국FPSB는 CFP 자격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윤리규정준수서약서에서 확인한 사항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증빙서류 발급기관, 외부의 신원조회 전문기관, 기타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신청자 본인의 범죄 및 징계기록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 제14조 (결격사유 및 보고의무)

- 1) 윤리규정 제3장의 다음의 결격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CFP자격인증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CFP자격인증자가 된 이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잠정적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며 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파산신청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아닌 신념에 따른 위법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6) 음주운전이나 마약물 사용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정부기관, 업계자율규제기관, 금융기관 또는 법률, 회계, 세무, 보험, 증권투자, 부동산투자 등에 관한 전문서비스법인과 단체(이하 “전문직서비스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기타 관련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탄핵포함)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그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정부기관, 업계자율규제기관, 금융기관, 전문직서비스업무수행기관 또는 기타 관련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에 따라 업무정지, 자격정지,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자금유용이나 자산유용의 죄를 범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중에 있는 자
  - (10) 한국FPSB가 인증하는 자격을 사칭하거나, 자격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1) 한국FPSB가 시행하는 자격시험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 받고 그 조치기간중에 있는 자
- (12) 공공의 이익이나 안녕 또는 질서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와 관련된 자
  - (13) 한국FPSB, 국제FPSB 또는 한국FPSB의 자격인증자나 회원의 명예 또는 신위를 손상하였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 2) CFP자격인증자는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음주 또는 약물사용에 관련된 경우 제외)을 제외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전문직업무정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통지 수령 후 10일 이내에 이를 한국FPSB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 6 장 CFP 자 격 의 인 증

### 제15조 (CFP자격인증 신청서류)

- 1) CFP 자격인증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자격시험 합격발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하 “합격확정일”이라 한다)로부터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합격유효기간 이내에 자격인증신청관련 서류를 한국FPSB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CFP 자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FP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합격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CFP 자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FPSB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CFP 자격인증신청서(별표 3)
  - (2)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별표 2)
  - (3) FPSB Korea Certificated Users Agreement (별표 4)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다만, CFP자격시험 응시원서와 함께 해당학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교육이수요건 면제자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 (5) 경력증명서 및 이력서
  - (6) 별도로 정하는 라이선스비 납입증명서
  - (7)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 x 4 Cm) 1매 또는 사진 파일
- 3) 합격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CFP 자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자격인증 신청서류 이외에 다음과 같이 계속교육학점을 취득하고 해당 계속교육 학점의 취득증명서를 첨부한 계속교육 이수보고서(별표 5)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교육요건에 대하여 경과된 달의 수(28일 미만의 달은 제외)를 기준으로 1개월당 계속교육 1.25시간의 비율로 기간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며, 2시간 이상의 재무설계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다만, 군복무, 출산 또는 육아,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학, 해외유학, 질병치료 및 장기요양 등 한국FPSB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초과 8년 이하의 경우가 적용된다.

자격인증 신청시기	계속교육요건	이 수 시 기
1년 이하	실지 취득학점	
1년 초과 5년 이하	기간계산(윤리2시간이상 포함)	신청일기준 2년 이내
5년 초과 8년 이하	기간계산(윤리2시간이상 포함)	신청일기준 2년 이내

- 4) 실무경험의 부족으로 CFP자격인증이 승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확정일로부터 5년의 기간 이내에 실무경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 출산 또는 육아,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학, 해외유학, 질병치료 및 장기요양 등 한국FPSB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8년의 기간 이내에 실무경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다만, 이 기간 중 AFPK 자격인증 또는 CFP 교육이수요건의 면제와 관련되는 해당 전문자격이나 학위를 유지하고 갱신하여야 하며, AFPK 자격인증이나 해당전문자격 또는 학위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CFP 자격인증의 후보자격도 자동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 5) 실무경험의 부족으로 CFP자격인증이 승인되지 아니하는 AFPK자격인증자의 경우에는 CFP자격시험 합격유효기간 이내에 CFP자격인증의 승인시까지 CFP자격인증자에 대한 계속교육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CFP자격시험 합격유효기간이 만료되어 CFP자격인증의 후보자격이 취소된 유효한 AFPK자격인증자의 경우에는 AFPK자격인증자에 대한 계속교육의 기준을 적용한다.
- 6) 한국FPSB는 자격인증의 최초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졸업증명서, 이수증명서, 자격취득증명서 또는 계속교육학점취득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본인이나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외부의 전문기관 등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 제16조 (CFP 자격인증의 승인 및 인증유효기간)

- 1) CFP 자격인증의 승인은 자격인증본부의 윤리규정 준수서약서상의 확인 및 서약사항에 대한 점검(disciplinary check)과 실무경험요건에 대한 점검(experience check) 및 AFPK자격을 포함하는 제6조 제1항의 자격 또는 학위의 유효성 점검(prerequisite check)을 거쳐 인증분과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CFP 자격인증 신청자의 실무경험요건 등의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심사책임자의 확인서(별표 12)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한국FPSB는 CFP 자격인증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자격인증신청서상의 주소지로 CFP 자격인증서를 송부한다.
- 3) CFP 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이하 “인증유효기간”이라 한다)은 2년으로 한다. 다만, CFP자격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7장의 규정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이 2년 단위로 연장된다.
- 4) CFP 자격인증이 승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CFP 라이선스비를 반환한다.



제17조 (CFP 자격인증과 AFPK자격인증의 관계)

- 1) CFP자격인증자가 CFP 자격을 유지하고 갱신하는 경우에는 AFPK 라이선스비를 면제한다.
- 2) AFPK자격인증자가 CFP 자격인증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AFPK 라이선스비 중 미경과분을 1개월당 24분의 1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급한다.

## 제 7 장 CFP 자 격 인 증 의 갱 신

제18조 (자격인증의 갱신 및 인증유효기간만료일) CFP자격인증자는 해당 최초자격인증일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이하 “인증유효기간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2년 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속교육의 요건)

- 1) CFP자격인증자는 인증유효기간만료일까지 2년마다 2시간 이상 윤리에 관한 과정을 포함한 30시간의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에 관한 과정은 윤리규정,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규정, 표장사용규정, 징계규정 등 재무설계업무수행과 관련된 규정과 법률을 포함하여 직업윤리의식의 유지와 향상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어야 하며, 계속교육의 편성기준과 계속교육학점이 인정되는 교육프로그램의 승인기준은 CFP 자격인증의 계속교육기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계속교육으로 인정되는 교과과정은 원칙적으로 한국FPSB가 등록승인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으로 한다. 다만, 해당되는 자격갱신기간 중에 재무설계와 관련되는 보험, 금융투자, 부동산, 세무, 법률 등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재무설계와 관련된 저술 및 강의 또는 방송 등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재무설계관련 컨퍼런스, 포럼, 워크숍, 세미나 등 한국FPSB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CFP 자격인증의 계속교육기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교육학점으로 인정한다.
- 3) 개인종합재무설계업무에 관한 전문지식(knowledge), 전문기법(skills) 및 응용능력(ability)의 배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나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프로그램 또는 과정을 이수하고 이에 대하여 계속교육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CFP자격인증자가 계속교육학점 인정신청서(별표 6)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격인증본부의 점검을 거쳐 커리큘럼분과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커리큘럼분과위원장의 승인으로 계속교육학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4) CFP자격인증의 계속교육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윤리규정 준수서약의 갱신) CFP자격인증자는 2년마다 계속교육이수보고서와 함께 윤리규정 준수서약서를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자격갱신에 대한 안내 및 통지)

- 1) 한국FPSB는 CFP자격인증의 인증유효기간만료일 3개월 전에 해당 CFP자격갱신 대상자에게 자격갱신에 관한 안내사항을 한국FPSB의 기록에 의한 최근의 주소지로 이메일, 우편 또는 전화번호(핸드폰을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자격갱신에 대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인증유효기간만료일 1개월 전까지 CFP자격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하여 자격갱신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인증유효기간만료일 15일 이전까지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만료일자로 CFP자격인증이 정지된다는 점과 자격정지일 이후 CFP자격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한국FPSB의 기록에 의한 최근의 주소지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3) 한국FPSB는 이 규정에 의한 통지서 발송일자와 전화통화일시 및 통화자를 표시하는 안내사항 발송 및 통화기록부를 작성하고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CFP자격인증의 갱신신청)

- 1) CFP 자격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유효기간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한국FPSB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CFP자격인증 갱신신청서(별표 7)
  - (2) 해당계속교육 학점취득증명서와 관련자격 취득증명서를 첨부한 계속교육이수보고서(별표 5)
  - (3) 갱신 작성한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별표 2)
  - (4) 갱신 작성한 FPSB Korea Certificated Users Agreement (별표 4)
  - (5) 명함(Business Card) 및 레터헤드(Letterhead)편지지
  - (6) 별도로 정하는 라이선스비 납입증명서
- 2) 한국FPSB는 자격인증의 갱신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이수증명서, 자격취득증명서, 계속교육학점취득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본인이나 증빙서류발급기관 또는 외부의 전문기관 등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 (갱신미필 또는 갱신거절에 따른 자격정지 및 통지)

- 1) 인증유효기간만료일까지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이하 “CFP갱신미필

자”라 한다)와 CFP자격인증의 갱신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자격인증의 갱신이 승인되지 아니한 자(이하 “CFP갱신거절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CFP자격인증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 2) 한국FPSB는 CFP갱신미필자와 CFP갱신거절자에 대하여 자격갱신미필의 사유 또는 자격갱신거절의 사유로 CFP자격이 정지되었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자격정지 이후 3년 이내에 제8장(CFP자격인증의 회복)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회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점을 알리는 CFP자격정지통지서(별표 8)를 한국FPSB의 기록에 의한 최근의 주소지로 이메일, 우편 또는 전화번호(핸드폰을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 3) 한국FPSB는 CFP 자격정지자 및 자격취소자의 인적 정보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자체 웹사이트, 파이낸셜 플래닝 저널 및 징계규정에서 인정되는 공시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계속교육학점 불인정시의 보완 기회부여)

- 1)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인증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교육 이수학점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수학점이 부족하여 계속교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한국FPSB는 신청인에 대하여 학점 보완을 위한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학점이 계속교육완료에 필요한 학점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 2) 전항에 의한 유예기간 중 신청자는 CFP 자격표장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25조 (자발적 자격정지)

- 1) 군복무, 출산 또는 육아, 질병치료 및 장기요양 등의 사유로 CFP자격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1년을 초과하여 유보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을 정하여 자발적 자격정지 신청서(별표 9)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자발적 자격정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정지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한국FPSB에 연장신청서(별표 9)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CFP자격인증자의 자발적 자격정지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4) 자발적 자격정지를 승인받은 자가 CFP자격인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19조의 계속교육의 요건에 의한 계속교육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경과된 달의 수를 기준으로 1개월당 계속교육 1.25시간의 비율로 기간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며, 2시간 이상의 재무설계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발적 자격정지기간	계속교육요건	이 수 시 기
1년 초과 3년 이하	기간계산(윤리2시간이상 포함)	신청일기준 2년 이내

- 5) 자발적 자격정지를 승인받은 자가 정지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자격인증의 회복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격인증이 정지된다. 다만, 제27조(CFP자격인증의 회복)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인증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6) 자발적인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라이선스비를 면제한다.

제26조 (갱신미필 및 갱신거절 등에 따른 자격정지의 효과)

- 1) 갱신미필이나 갱신거절 또는 자발적 자격정지의 사유로 CFP자격이 정지된 자는 AFPK자격도 자동으로 정지되며, 인증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 날 또는 자발적 자격정지 개시일로부터 한국FPSB의 어떠한 자격표장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갱신미필이나 갱신거절 또는 자발적 자격정지의 사유로 CFP자격이 3개월 이상 정지된 자가 자격인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장의 CFP 자격인증의 회복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갱신미필이나 갱신거절 또는 자발적 자격정지의 사유로 3개월 미만 CFP자격이 정지된 자의 경우에는 제22조의 CFP 자격인증의 갱신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8 장 CFP 자 격 인 증 의 회 복

제27조 (CFP 자격인증의 회복)

- 1) 1년 이하 CFP 자격인증이 정지된 자가 CFP 자격정지기간 종료 1개월 전부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한국FPSB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만료일자에 자동으로 CFP 자격인증이 회복된다.
  - (1) CFP자격인증 회복신청서(별표 10)
  - (2) 갱신 작성한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별표 2)
  - (3) 갱신 작성한 FPSB Korea Certificated Users Agreement (별표 4)
  - (4) 자격정지기간 중 자격표장의 사용중지 및 자격인증자로서의 업무정지와 다른 자격정지요건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는 CFP자격정지 이행확인서(별표 11)
  -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계속교육 학점취득증명서를 첨부한 계속교육이수 보고(별표 5)
  - (6) 징계절차진행에 따른 제반비용의 납입증명서
  - (7) 별도로 정하는 라이선스비 납입증명서 (다만,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지나갔거나 또는 자격인증의 회복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다가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 2) 1년 초과 3년 이하 자격인증이 정지된 자가 CFP 자격인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기간 종료 1개월 전부터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자격인증회복 신청서류를 한국FPSB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1년 초과 3년 이하 자격인증이 정지된 자의 CFP 자격인증의 회복은 인증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의 CFP자격인증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 CFP 자격인증이 정지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CFP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 5) CFP자격인증이 정지된 자가 자격인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19조의 계속교육의 요건에 의한 계속교육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경과된 달의 수를 기준으로 1개월당 계속교육 1.25시간의 비율로 기간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며, 2시간 이상의 재무설계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격인증 정지기간	계속교육요건	이 수 시 기
1년 이하	실지 취득학점	
1년 초과 3년 이하	기간계산(윤리2시간이상 포함)	신청일기준 2년 이내
- 6) CFP자격인증이 정지된 자에 대하여 CFP자격인증의 회복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된 AFPK자격과 한국FPSB의 다른 자격도 원칙적으로 자동으로 회복된다.
- 7) 한국FPSB는 자격인증의 회복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증빙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본인이나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외부의 전문기관 등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 (CFP 자격취소의 효과)

- 1) 제27조 (CFP자격인증의 회복) 제4항의 규정에 따라 CFP자격이 취소된 자가 CFP자격인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 (CFP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의 규정에 따라 CFP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CFP 자격인증의 최초신청절차에 따라 필요한 신청서류를 한국FPSB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CFP자격인증이 취소된 자는 AFPK자격인증과 한국FPSB의 다른 자격도 자동으로 영구히 취소되며, 한국FPSB의 어떠한 자격표장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자격회복자의 인증유효기간만료일) 자격을 회복한 CFP 자격인증자는 해당 자격회복일로부터 매2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 (이하 “인증유효기간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2년 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30조 (라이선스비)

- 1) CFP 자격인증자는 별도로 정하는 라이선스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2) 라이선스비는 최초 자격인증 신청시와 자격인증의 갱신 신청시 및 자격회복 신

청시에 적용된다.

## 제 9 장 개 인 정 보 의 보 호

제31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금지)

1) CFP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의 개인정보와 자격인증신청자를 포함하는 CFP자격인증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해당 응시자 또는 자격인증자가 동의하는 경우
- (2) 해당 응시자 또는 자격인증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가 소속직원 중 CFP 자격시험별 응시자, 합격자, CFP 자격인증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 (3) CFP자격시험별 소속기관별 교육기관별 교과과정 수료자, 응시자와 합격자의 인적사항 및 이를 활용한 분석자료의 경우
- (4) 징계규정에 따른 CFP자격인증자 및 회원에 대한 공개견책, 자격정지, 자격취소, 잠정적 자격정지 및 등록전 유자격자에 대한 승인정지 또는 승인거부의 경우
- (5) CFP교육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공개주의촉구, 공개경고, 공개견책, 자격정지, 자격취소의 경우
- (6) CFP자격시험관리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에 대한 차후 시험응시 제한 또는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합격취소의 경우
- (7) 법원의 명령 또는 법률에 따라 적절한 감독권을 가진 정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8) 윤리규정준수서약서, CFP자격인증 신청서류, CFP자격인증의 갱신신청, CFP 자격인증의 회복과 관련된 사실확인을 위한 경우

2) 전항의 예외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인적사항은 해당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의 6개 숫자로만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연락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전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 또는 법률에 따라 적절한 감독권을 가진 정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요청에 따르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사실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제32조 (비밀유지의 예외) 한국FPSB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CFP자격시험 응시자 또는 CFP자격인증자의 개인정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1) 징계규정 및 관련규정에 의한 공고의 경우

- 2) 법원의 유죄판결 또는 전문직업무정지 등에 관련된 사항
- 3) 진행중인 소송절차와 관련된 법원의 명령 또는 법률에 따라 적절한 감독권을 가진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4) 징계규정에 따라 공개금지에서 해제된 개인정보
- 5)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금지에서 해제된 개인정보

## 제 10 장 기 타

### 제33조 (이의신청)

- 1) 교육이수, 자격시험, 실무경험, 윤리규정준수서약, 자격의 최초인증, 자격인증의 갱신, 자격인증의 회복 등에 대한 한국FPSB의 결정과 조치에 대하여 불만사항이나 이의신청사항(이하 “이의신청 사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2)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사안과 함께 우편물 수령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표시하고, 이의신청사안의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와 기준은 이의신청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4조 (권고 및 벌칙조항)

- 1) 이 규정 또는 한국FPSB의 다른 규정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된다.
- 2) 징계규정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의 처분이 확정된 CFP자격인증자는 즉시 CFP 또는 AFPK자격인증자로서의 활동을 정지하여야 하며 한국FPSB의 어떠한 자격표장을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35조 (자격표장의 사용승인 및 오용방지)

- 1) 이 규정에 따라 유효한 CFP자격인증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한국FPSB의 CFP자격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 2) CFP자격표장을 사용 또는 복제할 경우에는 표장사용 기준규정(Standard to Use of the Certification Marks)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3) 한국FPSB는 유효한 CFP자격인증자가 자격표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오용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6조 (자격사칭에 대한 조치)

- 1) 이 규정에 따라 유효한 CFP자격인증자가 아닌 자가 CFP자격표장을 사용하거나 CFP자격인증자로 오인할 수 있는 언동을 하는 등으로 CFP 자격인증자 행세를 하는 자 (이하 “CFP 자격사칭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징계규정 제18조(징계처분의 공시)를 준용하여 해당자의 인적사항을 한국FPSB의 웹사이트, 신문광고, 파이낸셜 플래닝 저널 또는 관련 전문지를 통한 광고 등 한국FPSB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 2) CFP 자격사칭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하는 민사상 및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CFP 자격사칭자가 다른 전문자격증의 소지자이거나 기업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자격인증기관 또는 등록기관, 해당 소속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격사칭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제37조 (국제FP표준)

- 1) 이 규정은 전문성과 윤리성을 경비한 재무설계사 자격인증의 요건과 윤리기준 및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 등 재무설계에 관한 유일한 국제기관인 국제FP표준기구(FPSB: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가 제정하여 시행하는 자격인증의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법률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과 배경에 비추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2) 국제FP표준기구의 심의의결기구인 국제FPSB 평의회 회원국의 CFP자격인증기관이 인증하는 CFP자격인증자로서 “회원국간 CFP자격의 상호인정과 CFP 표장의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FPSB의 CFP자격을 인증 받은 자는 이 규정에 따른 CFP자격인증자로 본다.

제38조 (자격인증 관련기록의 보존) CFP자격인증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자격갱신 포함)는 원칙적으로 자격인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본인의 동의 하에 전자적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 (서류제출방법) 한국FPSB에 대한 신청서 등 서류의 제출은 우편 또는 한국FPSB의 웹사이트에 개설된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직접 전달 또는 다른 배달서비스를 통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 (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별표를 포함한다)은 인증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인증본부가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한국FP협회의 규정과 한국FPSB의 자격인증규정 및 관련규정에 따라 CFP 자격인증을 승인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CFP 자격인증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으로 자격인증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한국FPSB의 다른 규정에서 사용되는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이하 “국제FPSB” 또는 “국제FP표준기구” 라 한다)” 는 이 규정의 개정으로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이하 “국제FPSB” , “FPSB국제본부” 또는 “국제FP표준기구” 라 한다)” 로 수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 2항, 제25조 3,4항, 제27조 및 별표의 개정내용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 CFP<sup>®</sup> 자격시험 응시원서

CERTIFIED FINANCIAL PLANNER<sup>™</sup>

개 인 신 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	( - )	전화번호
				휴 대 폰
	직장		( - )	전화번호
			이 메 일	
응 시 요 건	직 업	<input type="checkbox"/> 은행, <input type="checkbox"/> 보험, <input type="checkbox"/> 증권, <input type="checkbox"/> 투신, <input type="checkbox"/> 자문, <input type="checkbox"/> FP,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자격인증번호		재응시여부	<input type="checkbox"/> 처음응시 <input type="checkbox"/> 재응시( )회째 응시
	수강교육기관 기 관		교육수강 일 자	200 년 월 일 부터 200 년 월 일 까지
	교육요건 면제대상 자격 또는 학위 보유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input type="checkbox"/> 변호사 <input type="checkbox"/> 세무사 <input type="checkbox"/> Chartered Life Underwriter(CLU) <input type="checkbox"/> Chartered Financial Analyst(CFA) <input type="checkbox"/> 경제학박사 <input type="checkbox"/> 경영학박사 <input type="checkbox"/> 재무설계관련학박사		
기 타 요 건	응시과목	<input type="checkbox"/> 지식+사례형 ( 월 일 ~ 일) <input type="checkbox"/> 지식형( 월 일) <input type="checkbox"/> 사례형( 월 일)		
	부분합격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식형 <input type="checkbox"/> 사례형	부분합격일자	20 년 월 시험
	편의필요여부	<input type="checkbox"/> 임신 <input type="checkbox"/> 신체장애	희망 편의조치	

- ※ 첨부서류: 1. 교육요건 면제대상자의 경우 해당기관의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2. 응시료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0 년도 제 회 CFP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한국FPSB 귀중

(별표 2)

## CFP<sup>®</sup>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Declaration and Agreement for CFP<sup>®</sup> Certification)

### 1. 확인 및 서약 (Declaration)


후보자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연락처: \_\_\_\_\_

후보자 본인은 아래에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고 거짓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1) 본인은 현재 어떠한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아니며, 과거에도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예 \_\_\_\_, 아니오 \_\_\_\_
- (2) 본인은 현재 직업상 또는 사업상의 행위와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민사소송의 피고인이 아니며, 과거에도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예 \_\_\_\_, 아니오 \_\_\_\_
- (3) 본인은 정부감독기관 또는 업계 자율규제기관의 조사의 대상이 아니며, 과거에도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예 \_\_\_\_, 아니오 \_\_\_\_
- (4) 본인은 현재 금융기관, 전문직서비스업무수행기관 또는 기타법인 및 단체 등의 조사의 대상이 아니며, 과거에도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예 \_\_\_\_, 아니오 \_\_\_\_
- (5) 본인은 현재 한국FPSB의 자격인증자가 되지 못하는 아래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거에도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예 \_\_\_\_, 아니오 \_\_\_\_

*(주) 위 내용 중 하나라도 “아니오” 라고 표시된 항목이 있으면, 각각의 사건에 관련된 주요한 사실을 별도의 용지에 기록 첨부하여야 하며, 소환장, 고소장, 답변서, 판결문, 벌금 납부증명 등과 같은 적절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2. 협약 사항 (Terms and Conditions of Certification)

- (1) 본인은 한국FPSB가 본인이 “CFP”, “CERTIFIED FINANCIAL PLANNER” 및  (헷볼모양로고) 자격상표 (이하 “CFP자격표장”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인증을 하였으며, CFP자격인증규정에 명시된 특정 기간 (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에 한해 유효함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합니다. 유효기간내에 자격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할 경우 자격인증의 효력소멸과 함께 CFP자격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유효기간 만료일자로 종결됩니다. 만일 자격 재인증 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CFP 자격표장의 사용을 중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유효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자격인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CFP 자격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FPSB가 박탈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2) 본인은 한국FPSB의 윤리규정 및 징계규정을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은 업무수행기준 규정 및 표장사용규정을 포함한 한국FPSB의 모든 규정과 규칙 및 방침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한국FPSB의 모든 규정과 규칙 및 방침의 현재 조항 및 앞으로 경우에 따라 수정될 조항에 대하여서도 성실하게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3) 만일 본인이 한국FPSB의 윤리규정 및 징계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한국FPSB가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 FPSB의 징계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상표인 CFP 자격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제반 권리를 한국FPSB가 소유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뒷장을 보십시오)

(4) 본인에 대한 자격인증과 관련하여, 고의적인 불법행위 혹은 전적인 부주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FPSB, 또는 한국FPSB의 이사, 임직원, 또는 한국FPSB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본인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본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본인은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후보자 본인은 제2항의 협약 사항에 명시된 각 조항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숙지하였으며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할 것을 자유의사로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을 포함하는 인적사항과 위반행위 및 징계 내용을 웹사이트 및 신문광고 등 징계관련 규정에 정하여진 방법으로 고객과 일반에게 공지하는 모든 조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되고 거짓없는 사실임을 서약하며 만일 진실과 다를 경우 실명공개 등 자격인증본부가 취하는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서명: \_\_\_\_\_

### 3. 결격사유 (Fitness Standards)

-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파산신청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아닌 신념에 따른 위법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음주운전이나 마약물 사용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정부기관, 업계자율규제기관, 금융기관 또는 법률, 회계, 세무, 보험, 증권투자, 부동산투자 등에 관한 전문서비스법인과 단체(이하 “전문직서비스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기타 관련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탄핵 포함)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그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정부기관, 업계자율규제기관, 금융기관, 전문직서비스업무수행기관 또는 기타 관련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에 따라 업무정지, 자격정지,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자금유용이나 자산유용의 죄를 범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중에 있는 자
- (10) 한국FPSB가 인증하는 자격을 사칭하거나, 자격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1) 한국FPSB가 시행하는 자격시험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받고 그 조치기간 중에 있는 자
- (12) 공공의 이익이나 안녕 또는 질서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와 관련된 자
- (13) 한국FPSB, 국제FPSB 또는 한국FPSB의 자격인증자나 회원의 명예 또는 신뢰를 손상하였거나 손상할우려가 있는자

(별표 3)

### CFP® 자격인증 신청서

#### (Application for Initial CFP® License)

성 명	한글/한자		주민번호	
	이 메 일		영문이름	
자 택	주 소	( - )		
	전 화		휴 대 폰	
직 장	주 소	( - )		
	회사명		부서명	
	전 화		팩 스	
우편물수령처	자 택( )		직 장( )	
CFP자격시험 합격년월		년 월 ( 회) 시험		
최종학력	학 교 명		전공학과	
보유전문자격	자격명			
	자격증번호			
	취득년월			

#### 주거지 및 영업장소에 대한 확인

##### (Declaration on Residential and Business Address)

대한민국의 CFP자격인증을 신청하는 본인은 신청서상의 자택주소가 본인의 주된 주거지이며, 또한 신청서상의 직장주소가 본인의 주된 영업장소임을 확인합니다.

앞으로 본인의 주된 거주지나 주된 영업장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격인증본부에 통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격인증 신청서상에서나 또는 이 확인서상에서 별도로 특별히 명기한 경우와 자격인증본부에 사전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은 본인의 주된 주거지 또는 주된 영업장소가 위치한 대한민국 이외의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종합재무설계 전문가로서 CFP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뒷장을 보십시오)

## 첨부서류

1. CFP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2.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3. 라이선스비 및 회비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은행 온라인 입금증 등)
4. 학교명과 전공을 포함한 학력 및 직무중심으로 서술된 이력(예: 1988년 000대학 00학과 졸업, 2001. 6. 8 - 2002. 5. 6 00기관 여의도지점, 개인고객 담당 )

## 기타안내사항

자격인증신청은 합격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매달 말일까지 접수된 자격인증신청은 다음 달에 CFP자격인증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승인된 자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인증서 및 참고자료를 우송하여 드리며, 자격인증 유효기간은 CFP 자격인증일로부터 2년간 입니다.

CFP자격인증자는 해당 최초자격인증일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 (이하 “인증유효기간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2년 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CFP자격인증자는 매2년마다 자격갱신신청서와 함께 2시간 이상 윤리에 관한 과정을 포함한 30시간 이상의 계속교육 이수보고서와 함께 윤리규정 준수서약서를 갱신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격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CFP자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속교육학점을 취득하고 해당 계속교육 학점의 취득증명서를 첨부한 계속교육 이수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년 마다 30시간 이상의 계속교육요건에 대하여 경과된 달의 수를 기준으로 1개월당 계속교육 1.25시간의 비율로 기간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며, 2시간 이상의 재무설계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과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u>자격인증 신청시기</u>	<u>계속교육요건</u>	<u>이 수 시 기</u>
1년 이하	실지 취득학점	
1년 초과 5년 이하	기간계산(윤리 2시간 이상포함)	신청일기준 2년 이내
5년 초과 8년 이하	기간계산(윤리 2시간 이상포함)	신청일기준 2년 이내

합격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CFP 자격인증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CFP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복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년까지 유효기간이 인정됩니다.

(뒷장을 보십시오)

(별표 4)

## FPSB Korea Certificated Users Agreement

It is understood and agreed that:

1. Certification is for two years only, is conditioned upon compliance with on going requirements for CFP certification, and is within the sole discretion of the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of Korea (FPSB Korea);
2.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FPSB) is the owner of the marks CFP and CERTIFIED FINANCIAL PLANNER and the CFP certification mark (CFP Marks) in countries outside the USA, and FPSB grants to the FPSB Korea a substantially exclusive license in the Republic of Korea to use the CFP marks in accordance with the License Agreement and the Affiliation Agreement between FPSB and FPSB Korea;
3. Use of the CFP marks is governed by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KPSB Korea as adopted from time to time;
4. The CFP marks may not be used as an organizational logo, trade name or company name without prior written agreement of KPSB Korea ;
5. Use of the CFP marks in advertising shall be in accordance with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KPSB Korea ;
6. Use of the CFP marks by KPSB Korea certificated users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 will be allowed;
  - (a) The distribution of business cards or other materials containing the CFP Marks and FPSB Copyrighted materials while traveling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 (b) The distribution of business cards or other materials containing the CFP Marks and CFP Board Copyrighted Materials to person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purpose of advising on personal financial plan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or
  - (c) The provision of financial planning services to person outside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d such services related to personal financial plan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or it is otherwise reasonable for such services to be provided by a KPSB Korea certificated user. For example, for purpose of paragraph (b) and (c), it may be reasonable to include in the definition of “personal financial planning” advice on insurance and investments available

(뒷면계속)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ax and estate regul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7. Certification may be revoked or suspended by the KPSB Korea for failure to adhere to the KPSB Korea's code of Ethics or other rules and polices of the KPSB Korea .

---

Signature (서명)

---

Name (이름)

---

ID Number (주민번호)

---

Date (년 월 일)



(별표 5)

계속교육 이수보고서 (CFP<sup>®</sup> 자격갱신용)

년 월 일

인적 사항	성 명		자격인증번호	
	전화번호		이 메 일	
	주 소			
프로그램 이수 내용	프로그램명		형태 및 주최기관	
	프로그램기간		보고 학점	윤리( ) 일반( ) 전문( )
	결과물내용	<p>** 결과물(수료증, 강의경력서, 저작물 등)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p>		
검토 내용	검토자	(서명)	검토일	
	학점인정 여 부		인정학점	윤리( ) 일반( ) 전문( )
	특이사항			





## 첨부서류

1. 계속교육 이수보고서
2. 갱신 작성한 CFP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3. 명함(Business Card) 및 레터헤드(Letterhead)편지지
4. 라이선스비 및 회비 납부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 (은행온라인 입금증 등)

## 기타 안내사항

매달 말일까지 접수된 자격갱신신청은 다음 달에 자격갱신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승인된 자격자를 대상으로 갱신된 자격인증서 및 참고자료를 우송하여 드리며, 자격갱신의 유효기간은 2년간 입니다.

CFP자격이 재인증된 자격갱신자를 포함한 모든 CFP 자격인증자는 해당 최초자격인증일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 (이하 “인증유효기간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2년 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CFP자격인증자는 매2년마다 자격갱신신청서와 함께 2시간 이상 윤리에 관한 과정을 포함한 30시간 이상의 계속교육이수보고서와 함께 윤리규정 준수서약서를 갱신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증유효기간만료일까지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갱신미필자이거나 또는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갱신이 승인되지 아니한 갱신거절자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CFP자격인증이 자동으로 정지되며, 또한 이와 같은 자격정지 이후 3년 이내에 CFP자격인증규정 제8장 (CFP자격인증의 회복)에 규정된 대로 자격을 회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CFP자격인증이 자동으로 취소되게 됩니다.

자격인증이 취소된 이후에 CFP자격인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FP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한 후에 CFP자격인증을 신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CFP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CFP자격인증과 AFPK자격인증이 영구히 취소되며, CFP자격시험과 AFPK자격시험 및 한국FPSB의 어떠한 자격시험에도 응시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비록 응시하더라도 무효로 처리되게 됩니다.

(뒷장을 보십시오)



(별표 9) CFP<sup>®</sup> 자격인증의 자발적 자격정지신청서  
 (Application for Inactivation of CFP<sup>®</sup> License)

성 명	한글/한자		주민번호	
	이 메 일		영문이름	
	CFP 자격 인증번호			
자 택	주 소	( - )		
	전 화		휴 대 폰	
직 장	주 소	( - )		
	회사명		부서명	
	전 화		팩 스	
우편물 수령처	자 택( ) 직 장( )			
자격시험합격일	년 월 시험			
자격정지 사유	(또는 연장사유)			
정지신청 기간	(또는 연장기간) 년 개월 (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최종학력	학 교 명		전공학위	
보유전문자격	자 격 명			
	자격증 번호			
	취득년월			

아래에 서명한 신청인은 CFP자격인증규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자발적 자격정지를 신청하오며, 정지기간 중에는 한국FPSB의 어떠한 자격표장도 사용하지 아니 할 것임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증빙서류 목록:

(별표 10)

### CFP<sup>®</sup> 자격인증 회복신청서

#### (Application for Recovering CFP<sup>®</sup> License)

성 명	한 글		한 자	
	영문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자 택	주 소	(   -   )		
	전 화		휴 대 폰	
직 장	주 소	(   -   )		
	회사 명		부서명	
	전 화		팩 스	
우편물 수령처	자 택(   )                      직 장(   )			
자격정지사유				
자격정지기간	년 개월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보유전문자격	자격명			
	자격증 번호			
	취득년월			

#### 주거지 및 영업장소에 대한 확인

##### (Declaration on Residential and Business Address)

대한민국의 CFP자격인증을 신청하는 본인은 신청서상의 자택주소가 본인의 주된 주거지이며, 또한 신청서상의 직장주소가 본인의 주된 영업장소임을 확인합니다.

앞으로 본인의 주된 거주지나 주된 영업장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격인증본부에 통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격인증 신청서상에서나 또는 이 확인서상에서 별도로 특별히 명기한 경우와 자격인증본부에 사전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은 본인의 주된 주거지 또는 주된 영업장소가 위치한 대한민국 이외의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종합재무설계 전문가로서 CFP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뒷장을 보십시오)

### 첨부서류

1. 자격정지명령 이행사실 확인서 또는 자발적 자격정지 종료확인서
2. 갱신 작성한 CFP윤리규정 준수서약서
3. 계속교육이수보고서
4. 라이선스비 및 회비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은행온라인 입급증 등)

### 기타 안내사항

매달 말일까지 접수된 자격회복신청은 다음 달에 자격회복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승인된 자격자를 대상으로 새로 회복된 자격인증서 및 참고자료를 우송하여 드립니다. 회복된 자격의 유효기간은 자격인증회복일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이하 “인증유효기간만료일”이라 한다)까지 2년간입니다.

자격회복자를 포함한 모든 CFP 자격인증자는 매2년마다 2시간 이상 윤리에 관한 과정을 포함한 30시간 이상의 계속교육 이수보고서 및 갱신 작성한 윤리규정 준수서약서를 첨부한 자격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CFP자격인증이 정지된 자가 CFP자격인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속교육학점을 취득하고 해당 계속교육 학점의 취득증명서를 첨부한 계속교육 이수보고서를 첨부한 자격회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년 마다 30시간 이상의 계속교육요건에 대하여 경과된 달의 수를 기준으로 1개월당 계속교육 1.25시간의 비율로 기간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며, 2시간 이상 재무설계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과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u>자격회복 신청시기</u>	<u>계속교육요건</u>	<u>이 수 시 기</u>
1년 이하	실지 취득학점	
1년 초과 <u>3년</u> 이하	기간계산(윤리 2시간 이상포함)	신청일기준 2년 이내

갱신미필이나 또는 갱신거절의 사유로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CFP자격인증이 자동으로 정지되거나 또는 자발적 자격정지신청 등으로 CFP자격인증이 정지된 자가 3년 이내에 CFP자격인증규정 제8장 (CFP자격인증의 회복)에 따라 자격을 회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CFP자격인증이 자동으로 취소되게 됩니다.

자격인증이 취소된 이후에 CFP자격인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FP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다만,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CFP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CFP자격인증을 포함하여 한국FPSB의 어떠한 자격도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별표 11)

## CFP<sup>®</sup> 자격정지 이행확인서

### 한국FPSB 귀중

CFP 자격인증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된 본인은 자격정지기간의 종료에 따라 자격정지기간 중 CFP자격표장의 사용중지와 CFP자격인증자로서의 업무정지 및 다른 자격정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확인 사항

1. 자격정지 기간
2. 자격정지에 따른 조건 및 이행
3. 자격정지의 사유
  - (1) 갱신신청서의 미제출에 따른 갱신미필 ( )
  - (2) 갱신승인요건의 미비에 따른 갱신거절 ( )
  - (3) 윤리규정 및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 )

본인은 본인이 확인한 위의 사항이 진실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FPSB의 윤리규정과 징계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제반 조치에 이의없이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및 서명

CFP 자격인증번호

주            소

(별표 12)

## 자격인증신청 심사책임자 확인서

인증분과위원회 귀중

CFP®자격인증 신청자(20    년    월)에 대한 실무경험자료 및 윤리규정준수 서약서상의 확인 및 서약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자격인증 심사자료의 작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래에 서명한 본인은 CFP®자격인증을 신청한 CFP®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인증심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1) 실무경력에 대한 심사자료는 해당신청자의 소속기관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정리과정에서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서면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보완서류를 바탕으로 재점검한 후 최종 정리하였으며, (2) 윤리규정준수서약의 확인 및 서약사항은 해당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한 윤리규정준수서약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해당신청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는 모두 진실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는 한국FPSB가 CFP® 또는 AFPK® 자격의 인증과 관련한 모든 신청자를 신뢰하며 따라서 이들이 제출하는 서류도 모두 진실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한국FPSB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한국FPSB  
                              자격인증본부

팀장    \_\_\_\_\_                    \_\_\_\_\_

          (성 명)                           (서 명)